

<음성확인서 FAQ 관련 주요 개정사항, '22. 3. 2.>

구분	기존	개정	사유
경유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	최초출발국 또는 경유국가에서 검사 및 발급한 음성확인서 인정 원칙	출발일 48시간 이내 기준만 준수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발급국가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(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·발급한 경우도 인정 가능)	현행 반영
단순재검출(확진 후 완치자) 추정 내국인 항공편 탑승 등 입국지원(3.7일 입국자부터 적용)	<신설>	출발일 기준 10일 이전 40일 이내 확진 및 치료한 내국인에 대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	제84차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결과('22.2.24.)

## 해외입국자 'PCR 음성확인서' 제출관련 FAQ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2022. 3. 2.(수)>

### 1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"PCR 음성확인서"도 인정되는지?

- "PCR 음성확인서"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
- 단,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(번역인증문)를 함께 제출해야 함
  - \*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. 공인번역사무소(공인번역가 포함) 번역본은 인증 불요
  - ※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

### 2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?

- 유전자 증폭 검출(NAATs, 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.
  - 항원(Antigen, AG, Ag) · 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와 검체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

### 3. "PCR 음성확인서"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?

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(2일)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
  - \* (예시) '22.1.21. 10:00 출발한 경우에는 22.1.19.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(2일)

구분	세부기준
입국일이 '22.1.20. 이후인 경우	<b>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한 음성확인서</b> ※ 검사 및 발급일 모두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이내인 경우에만 인정

- ※ 항만 입국자는 입국날짜 관계없이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적용(현행 유지)

**4.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(인후도말검사) 외에 SALIVA TEST(타액 검사)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?**

- 검체 채취 방식\*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-PCR(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)검사인 경우라면,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
  - 그 외 검사기관,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(5번 질의 참고)은 준수
- \* 단,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'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'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
**5. "PCR 음성확인서"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?**

- 성명(여권 기재내용과 동일-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, 생년월일 (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), 검사방법\*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, 검사기관명 등
- \* NAATs, PCR, LAMP, TMA, SDA 등

**6. 'PCR 음성확인서'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?**

- 병원 이메일,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**7.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"PCR 음성확인서" 만 인정되는지?**

-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\*(필리핀, 우즈벡)에서 출발한 내·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'PCR 음성확인서' 에 한하여 인정
  - \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 질병관리청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
- 이외 국가는,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

**8. "PCR 음성확인서"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,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?**

-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본으로 제출하여야 함
  - 다만, 입국 후 사후제출(출력 필요)도 인정하고 있으나,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\* 또는 시설에서 격리(비용 자부담) 가능
- \*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(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)

**9.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'PCR 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**

-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
  - (B국가를 입국한 경우) B국가(경유국)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(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)
  - (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) A국가(최초출발국)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(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)
- ※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, 출발국가(또는 경유국)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(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)
  - <예시> A국가(2.28일 출발) → B국가(2.28일 도착, **3.1일 출발**) → 우리나라(3.1일 도착)

구분	출발 기준	비고
B국가를 입국(체류)한 경우	3.1일(B국가 출발일)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	※ 발급국가는 상관 없음 (반드시 A국가나 B국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능)
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순 경유한 경우	2.28일(A국가 출발일) 0시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	

**10.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,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의무가 있는지?**

- 한국 입국이 아닌 경우 승객(환승객)의 경우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불요

**11. 영유아 경우에도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의무가 있는지?**

-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**만 6세 미만**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
  - \*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
- 다만,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

**12.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대상인지?**

- A비자(A1: 외교, A2: 공무, A3: 협정) 소지자(외국인),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
**13.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, “PCR 음성 확인서” 제출 의무가 있는지?**

-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입국요건에 부합하는 “PCR 음성확인서”를 제출해야 함

**14. “PCR 음성확인서” 제출 제외 대상은?**

-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- 항공기 승무원
-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입국 당시 “대한민국 선원 소지자”에 한함)
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‘내국인·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(212~)
- 출발일 기준 **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**(본인 입증책임, FAQ 18번 참고)
  - ※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,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
  - ※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**15. 내국인이 ‘PCR 음성확인서’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**

- PCR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 미달 포함)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(‘21. 7. 15.~)
  - 다만,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**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**(14번 문항 참고)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**항공기 탑승 가능**
-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,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5일(시설사용료\* 60만원(12만원/일) 자부담) 후 **자가격리 2일 조치**(항만의 경우, 전 선원 하선금지)
-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·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검역법」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
  - ※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. 음성확인서 제출예외대상은 제외)

**16. 외국인이 “PCR 음성확인서”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?**

-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, 국내 도착 후 기준미달이 확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(항만의 경우, 전 선원 하선금지)
  - ‘국내 예방접종완료자’(외국인)의 경우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
  - 다만, 현지 입국 불허 등으로,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귀국항공편 탑승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  - ※ 격리면제서 소지 외국인의 경우 ‘해외 예방접종’ 여부와 관계없이,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외국인(장·단기체류 모두)은 입국금지
-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·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「검역법」 등에 따라 고발 조치, 강제출국 요청 가능

**17.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, “PCR음성확인서” 검사 및 발급 기준 (공항 48시간, 항만 72시간)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?**

- 운송수단의 장(항공사, 선사 등)이 기상악화,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(본인 입증 책임)

**18. (신설)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,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?**

- (대 상) 출발일로부터 ‘10일 전 40일 이내’ 확진되고, 격리해제된 내국인(37.5℃ 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)
- (준비서류) 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, ‘확진일(또는 격리시작일)’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\* 확인
  - \* (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, 검사결과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)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
- (확진일) 출발일로부터 ‘10일 전 40일 이내’ 확진(또는 확진으로인한 격리시작) 여부

구 분	확진일	출발일
입국지원 가능 예시(1)	'22. 1. 26. (‘출발일’ -40일)	3. 7. (입국지원 가능)
입국지원 가능 예시(2)	'22. 2. 25. (‘출발일’ -10일)	3. 7. (입국지원 가능)
입국지원 불가 예시(1)	'22. 1. 25. (‘출발일’ -41일)	3. 7. (입국 지원 불가)
입국지원 불가 예시(2)	'22. 2. 26. (‘출발일’ -9일)	3. 7. (입국 지원 불가)

- (입국절차)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→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
  -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
- (시 행) 3.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
- (부정서류 제출 시)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·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, 당사자에 대해 고발\*조치 가능
  - \* 「검역법」 제12조 및 제39조,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

※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,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정적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 + 2일 자가격리